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3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박균택 · 최혁진 · 박지원
권칠승 · 황명선 · 서영교
정준호 · 김문수 · 김준형
박정현 · 이성윤 · 이재강
민형배 · 박은정 · 박선원
이건태 의원(16인)

제안이유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받아왔음.

특히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법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안 제3조).

다. 전국 법원별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함(안 제4조).

라.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하여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구속영장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속영장심사위원은 제척·기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구속영장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구속영장심사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구속영장심사위원”(이하 “구속심사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관의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구속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각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3.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 및 추천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구속심사위원의 인원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속영장 전담 법관 수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④ 구속심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구속심사위원의 자격) ① 제4조제1항의 기관 및 단체는 사회적 경험과 인품을 갖춘 사람을 구속심사위원으로 추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속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구속심사위원의 직무) ① 구속심사위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2명이 참여하고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② 법관은 구속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되, 그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구속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은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제7조(자료 제공 및 열람) ① 법관은 구속심사위원회에 구속영장 신청서, 변호인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에 제공한다.

② 구속심사위원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법관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및 비밀유지 등) ① 구속심사위원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 법관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속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구속심사위원 또는 구속심사위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구속심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운영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속심사위원의 구성, 참여 방식, 의견서 제출 및 기록의 보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 이 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피의자 심문)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